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7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 외 11명
- 나. 발의일자 : 2016년 8월 26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30일
- 라.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우형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에는 25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상호협조·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간 업무협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支會)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를 육성 및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규정함(안 제5조)
-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경비에 대한 보조와 재산·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 나.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7개 조에 걸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의 책무, 재산과 시설의 무상 대여,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 밖의 재산 출연 또는 기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의 책무
제3조	경비 등의 보조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경비 보조 및 재산·시설 무상대여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5조	지도 및 감독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보조사업 수행 보고의무 및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
제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제7조	준용	규정한 사항 외 기타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다. 조문별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의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는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한 지회(支會)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2조(책무)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는 우수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육성과 서울특별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경비 등의 보조)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는 서울특별시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3항에 서술된 사업의 실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경비 등의 보조)와는 일부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고 동법 제15조의 취지와 목적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본부장 방침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를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근거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 서울시 문화본부 2016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예산 >

예산과목	사업내역	예산(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문화원연합회 서울지회 사업비	164,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방문화원연합회 서울지회 운영비	64,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개 자치구 지방문화원 지원	1,106,250
시설비	영등포문화원 긴급 보수 지원	50,000
합 계		1,384,250

- 안 제5조(지도 및 감독)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 의무를 명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안 제6조(재산의 출연 등)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연합회에 대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再)기재함으로써 동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준용)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임

## 라. 종합검토의견

-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25개의 서울특별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이 미비한 바,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협업 책무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상호협조·공동이익 증진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첨부 : 1.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현황  
2. 서울시 문화원연합회 현황  
3. 서울시 25개 지방문화원 현황  
4. 서울시 지방문화원장 현황



##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현황

지방문화원진흥법('94.1.7 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구 지방문화원 및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운영 지원

###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및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2조(시장의 책무) 제2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비보조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지방문화원 및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소요예산 : 1,384,250천원
  - 자치구 25개 지방문화원 : 1,106,25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개 문화원당 44,250천원(사무국장 인건비 22,500천원, 사업비 21,750천원)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228,0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64,000천원) : 사무처장 및 간사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경상운영비
    - 사업비 (164,000천원) : 서울문화원엑스포, 서울문화 소식지 발간 등
    - ※ 운영비만 자부담 일부 반영되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
  - 영등포문화원 긴급보수 지원 : 50,000천원(시설비)

### 지원방법

- 지방문화원,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 분기별, 사업별 교부 후 정산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지회설치
- 한국문화원연합회정관 제8장 제31조(지회의 설치)

**연혁**

- 1996. 09.20 : 창립총회 개최, 초대 지회장 최병흠(관악문화원장)
- 1999. 01.23 : 정기총회 개최, 제2대 지회장 김현풍(강북문화원장)
- 2000. 04.12 : 임시총회 개최, 제3대 지회장 이영철(도봉문화원장)
- 2001. 02.08 : 정기총회 개최, 제4대 지회장 권용태(강남문화원장)
- 2003. 02.07 : 정기총회 개최, 제5대 지회장 김영섭(동대문문화원장) ~7대
- 2011. 03.18 : 정기총회 개최, 제8대 지회장 이경동(양천문화원장) ~9대
- 2015. 02.27 : 정기총회 개최, 제10대 지회장 김태웅(중랑문화원장)

**일반현황**

조 직		대표자		사무실		사무처 직 원
회 원	임 원	성 명	임 기	위 치	규 모	
25	13	김태웅	~ '17.2.26	종로구 난계로 255 대경빌딩 1006호	· 83㎡(25평)	2
문화원장	회 장 1 부회장 2 감 사 1 운영위원 9	중 랑 문화원장	3년 (중임가)	· 보증금 5,000만원 · 월 임대료 584천원 · 월 관리비 819천원 ※ '06.6.10. ~ 현재까지 사용중		· 사무처장 · 직원1

**예산현황**(단위: 천원)

구 분		시보조금		한국문화원 연합회(국고)		자 체			비 고
년도	계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경상비	회비	협찬금	이월	
2015	286,775	217,900		21,475		47,400			
		153,900	64,000	6,000	15,475	17,500	29,410	490	

첨부3

서울시 25개 지방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원장	국장	설립일	시설현황 (연면적)	주소	전화번호	입주현황	임대료
종로	최창혁	이동규	'94.12.22	247m <sup>2</sup>	종로구 율곡로5 종로문화원	2148-4087	단독원사	무상임대
중구	김장환	이희탁	'95. 8.17	389m <sup>2</sup>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1번지 한화빌딩1층) 중구문화원	775-3001	한화빌딩 1층	무상임대
용산	박삼규	김민제	'97. 12.9	1,286m <sup>2</sup>	용산구 원효로 효창원로8길 28 용산문화원	703-0052	단독원사	무상임대
성동	변대석	박민호	'97.10.21	105m <sup>2</sup>	성동구 왕십리길 288 성동문화회관2층 성동문화원	2286-6234	성동문화회관 2층	무상임대
광진	오금진	유관중	'96.11.11	2,454m <sup>2</sup>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7 광진문화원	447-0244	단독원사	무상임대
동대문	김영섭	강임원	'98.12.28	1,507m <sup>2</sup>	동대문구 답십리도 210-9 동대문문화회관 동대문문화원	2241-9300	동대문문화회관 3층	무상임대
중랑	김태웅	조훈	'98. 9.26	410m <sup>2</sup>	중랑구 면목로238 중랑구민회관3층 중랑문화원	492-0066~7	중랑구민회관 3층	무상임대 (전기료 수도료납부)
성북	조태권	강성봉	'96.12.30	620m <sup>2</sup>	성북구 성북로 4길 13-8 성북문화원	765-1611	단독원사	무상
강북	김현풍	박은석	'96.12.12	192m <sup>2</sup>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본관3층 강북문화원	999-8109	강북문화회관 3층	무상
도봉	이보용	홍기원	'94. 8.20	1,989m <sup>2</sup>	도봉구 도봉로 522번지 도봉구민회관3층 도봉문화원	905-4026	도봉구민회관 3층	무상
노원	김진학	이의경	'97.12. 9	1,686m <sup>2</sup>	노원구 동일로 197길 24 노원문화원	938-1244	단독원사	무상
은평	김명자	정영숙	'98.11. 5	1,069m <sup>2</sup>	은평구 예술의길67 은평문화예술회관2층 은평문화원	383-9300	은평문화회관 3층	관리비
서대문	신현준	이화영	'01.10.26	342m <sup>2</sup>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서대문문화원	3217-1592	서대문문화체육회 관 2층	무상
마포	최병길	김춘배	'97.9. 30	720m <sup>2</sup>	마포구 백범로227(신공덕동158번지) 마포문화원	312-1100	단독원사	무상
양천	이경동	박주현	'97. 2. 28	2,789m <sup>2</sup>	양천구 목동서로367 양천문화회관5층 양천문화원	2651-5300	양천구민회관 5층	무상
강서	김병희	김성암	'95. 5.23	2,046m <sup>2</sup>	강서구 화곡로 215번지 (우장산동 111-90) 강서문화원	2607-4233	강서문화센터 내 5층	무상
구로	최문식	유영환	'05. 3. 9	895m <sup>2</sup>	구로구 경인로 393-7 일이삼전자타운3동5층 구로문화원	851-0837	복합건물 내	무상
금천	이종학	홍혜봉	'99. 6.22	395m <sup>2</sup>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1(금천폭포공원 내) 금천문화원	896-8553	단독원사	무상임대
영등포	정진원	소병관	'99. 8. 9	1,324m <sup>2</sup>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길로 275번지 영등포문화원	846-0155	단독원사	무상임대
동작	유대용	손화정	'98.12.21	2,683m <sup>2</sup>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문화복지센터 3층 동작문화원	822-8500	문화복지센터 지상 3~5층	무상임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관악	김윤철	오미숙	'92. 2.28	2,874m <sup>2</sup>	관악구 신림로3길35(신림동)1층 관악문화원	885-5975	관악문화회관 도서관	무상
서초	김선희	박병길	'09. 3.17	1,163m <sup>2</sup>	서초구 강남대로 201번지(양재동25번지) 서초구민회관 2층 서초문화원	2155-8607	서초구민회관 1, 2층	무상
강남	최병식	이정근	'98. 2.19	914m <sup>2</sup>	강남구 테헤란로8길36 3층 강남문화원	3454-1517	역삼주거보호 센터 3, 5층	무상임대
송파	심재안	홍성만	'94. 9. 7	2,315m <sup>2</sup>	송파구 올림픽로 44번지 송파문화원	414-0354	단독원사	무상임대
강동	양재곤	박우천	'99. 1.29	99m <sup>2</sup>	강동구 상암길168(천호동41) 강동구민회관 2층 강동문화원	3425-6994	강동구민회관 2층	무상임대

#### 첨부4. 서울시 지방문화원장 현황

연번	문화원	원장	사진	현직업	생년월일	약 력
1	서울시 문화원 연합회 중랑 문화원	김태웅		(주)영건산업 대표	53.10.30	·(주)영건산업 대표 ·배아투스 대표 ·북부법원 조정위원회 회장 ·전)중랑구 상공회 회장
2	종로 문화원	최창혁		우리빌딩 대표	47.04.26	·서울예술대학총동창회장 ·새마을운동 종로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3	중구 문화원	김장환		·(재)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	30.05.10	·충무공 기념사업회 회장 ·제6대 중구문화원 원장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4	용산 문화원	박삼규		(주)미가로 대표이사	54.08.15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서부지검 시민감찰위원
5	성동 문화원	변대석		비전관광호텔 대표이사	39.12.12	·전)(주)대아금속 대표이사 ·현)비전관광호텔 대표이사 ·현)성동경찰서 보안위원장 등
6	광진 문화원	양희중		(주)예향도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56.9.2	·전)광진문화원 부원장 ·전)광진 생활체육회장 ·현)민주평통 고문 ·현)서울특별시 제10대 생활체육회장
7	동대문 문화원	김영섭		백운당한의원장	40.11.28	·민주평통상임위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전)서울시지회장
8	성북 문화원	조태권		(주)광주요대표이사 (주)화요 대표이사	48.08.22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무형유산자문위원회 ·(주) 광주요 대표이사 ·(주) 화요 대표이사
9	강북	김현풍		<김현풍 치과> 대표 의사	41.12.17	·前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前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겸임 교수 ·前 도봉문화원장, 강북문화원장 ·前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장 ·前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연 번	문화원	원장	사진	현직업	생년월일	약 력
10	도봉 문화원	이보용		도봉서원 이사	42.08.06	·전)창덕여고 교장 ·전)서울시교육청 장학담당장학관
11	노원 문화원	김진학		(주)강원웰빙협동 조합 이사장	50.05.27	·고려대학교지방자치법학연구회수석이사 ·서울시 공무원 퇴직
12	은평 문화원	김명자		소설가	42.10.22.	·소설가 ·전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현 김동리기념사업회 회장 ·현 중앙대문인협회 회장
13	서대문 문화원	신현준		우일산업(주) 대표이사	46.06.02	·우일산업(주)대표이사 ·서대문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서대문고문
14	마포 문화원	최병길		한국종합목재(주) 유니마루대표	55.02.05	·시인 ·한국종합목재(주) ·유니마루대표
15	양천 문화원	이경동		다모아자동차(주) 대표이사회장	45.08.01	·중부운수(주) 대표이사회장 ·서울시문화원연합회 회장 ·다모아자동차(주)대표이사회장
16	강서 문화원	김병희		오신산업(주) 대표이사	48.03.1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강서구장학회 이사장(전) ·강서경찰서 청소년육성회 회장(전)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회장(현)
17	구로 문화원	최문식		세일화섬(주) 대표이사	38.12.15	·前 구로구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한국산업단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회장 역임 ·세일화섬(주) 대표이사
18	금천 문화원	이종학		금당타운시티 대표	48.02.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의회 의장(전) ·서울특별시 시의원 건설위원장(전) ·민주평통 금천구 수석부회장 ·중국동북사범대학교 명예 경제학박사 ·남부지원 조정위원

연 번	문화원	원장	사진	현직업	생년월일	약 력
19	영등포 문화원	정진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장	37.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풍약품 대표</li> <li>· 고운빛여성합창단장</li> <li>· 원풍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li> </ul>
20	동작 문화원	송지현		(주)지현건재 대표이사	58.0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구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li> <li>· 前 동작복지재단 이사장</li> <li>· 前 동작자원봉사은행 상임이사</li> </ul>
21	관악 문화원	김윤철		서광산업(주) 대표 회장	42.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광산업(주) 대표 회장</li> <li>· 민주평통 자문위원</li> <li>· 관악구 복지후원회장</li> <li>· 관악문화예절원 원장</li> </ul>
22	서초 문화원	김선희		중국산동성조장 대학교 서양학과 교수	56.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문화원 부원장</li> <li>· 한국예술작가협회 부회장</li> <li>·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28회 특선</li> </ul>
23	강남 문화원	최병식		주류성 출판사 대표	51.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JC회장</li> <li>·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li> <l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li> </ul>
24	송파 문화원	심재안		(주)제일영재학원 이사장	51.0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일영재학원 이사장</li> <l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장</li> <li>·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li> </ul>
25	강동 문화원	양재곤		다성건설(주) 대표이사	57.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성건설(주) 대표이사</li> <li>· 강동구 체육회 수석부회장</li> <li>· 강동구 상공회 수석부회장</li> <li>· 민주평화통일 강동구제1지회장</li> <li>· 강동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단장</li> </ul>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7
----------	------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26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이신혜 · 우창윤 · 김인호 · 전철수 ·  
김경자(양천) · 최웅식 · 김진철 ·  
박진형 · 허기희 · 김희걸 · 김미경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에는 25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상호협조·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간 업무협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支會)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를 육성 및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규정함(안 제5조)
- 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경비 등의 보조),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재산의 출연)에 따라 비용발생은 예상되나,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거나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어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기추진 사업 현황은 [붙임1] 참고)
  - 제3조(경비 등의 보조),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 ※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출연 기준 및 범위 등이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
  - 제6조 (재산의 출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3. 미첨부 사유

- 제6조제1항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주무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철희  
강평선

☎ 02-3705-1279, e-mail(kangdan@seoul.go.kr)

**[붙임1] 기추진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방침 : 2016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 교부대상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2016년 사업예산 : 228,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64,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64,000천원
-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및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교부방법 : 월별 수시 교부(사업비), 분기별 교부(운영비)
- 예산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내역	지원액 (단위:천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합 계	228,000
		소 계	164,000
		○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61,820
		○ 『서울문화』 발간	39,016
		○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12,164
		○ 국악 경연대회	12,000
		○ 무용 경연대회	12,000
		○ 서울문화원 사무국 직원 교육	3,000
		○ 서울문화원 아카이브 사업	24,0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사무처장 인건비(28,000), 간사 인건비(9,140), 사무실 임차료(16,850), 경상운영비(10,010)	64,000